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(홍국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1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홍국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강산, 박춘선, 박환희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민옥, 이봉준, 이상욱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황철규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- 2014년 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하고 있어 실제 교육 효과가 높으나, 예산 등 지원의 한계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또한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·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 경찰학교의 적극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가 필요함
- 이에 청소년경찰학교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·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경찰학교”란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업으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내에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.
2. “학교폭력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

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소년경찰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2. 청소년경찰학교 참여 학생 모집 지원에 관한 사항
3.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만족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행·재정적 지원) 교육감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